

의안번호	2206035
의 퇴 인	이만희의원
회 답 일	2024.12.20.
추계번호	24E548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-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29년 4년간 총 1조 7,235억원(연평균 4,309억원)으로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2,553	-17,235	-4,309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2025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, 2026년부터 저율과세* * 2026년: 5%, 2024년 이후: 9% - (현행) 2028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, 2026년부터 저율과세* * 2029년: 5%, 2030년 이후: 9%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부칙(공포한 날부터 시행)을 반영하여 2025년 중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의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29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4년 1조 1,647억원으로 202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52.7% 증가

[표 2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20년 실적	2021 실적	2022 실적	2023 실적	2024 전망	'21~'24 연평균
조세감면액 (증가율)	4,372 (-13.9)	3,269 (-25.2)	3,113 (-4.8)	6,226 (100.0)	11,647 (87.1)	6,064 (52.7)

자료: 기획재정부 제출자료

(2) 추계 방법

□ 추계 방법은 2023~2024년 평균 조세지출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 실적치(8,937억원)를 기준으로 함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- 현재 조세지출액은 이자·배당소득세율이 14%일 때 기준이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차이는 2026년 5%p, 2027~2028년 9%p, 2029년 4%p로 세율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29년은 5%, 2030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3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-5	-9	-9	-4	0

- 이자·배당소득세율이 14%일때 평균(2023년~2024년) 조세지출액이 8,93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(8,937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14, 배당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14 적용
- 따라서 연도별 세율 차이에 1%당 조세지출액을 곱하여 연도별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 결과
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6년 3,192억원 등 2026~2029년 동안 총 1조 7,235억원(연평균 4,30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2,553	-17,235	-4,309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